

의안번호	2216596
의 퇴 인	김건 의원
회 답 일	2026. 2. 20.
추 계 번호	26A07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설치 및 전략적투자 기금의 출연 등을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조 1,000.1억원, 2030년 0.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0.4억원(연평균 6,000.1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0.1	0.1	0.1	0.1	0.1	0.4	0.1
기금 조달(안 제6조)	11,000	9,500	9,500	—	—	30,000	6,000
합계	11,000.1	9,500.1	9,500.1	0.1	0.1	30,000.4	6,000.1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둠	의무 규정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기금 조달)	○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달 - 정부 출연금 3조원 -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위탁자산 및 차입금, 출연금 -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등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2	안 제6조(기금 조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
 - 본 추계는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¹⁾의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민간위원 5:5 비중(각각 7인)으로 될

것으로 가정

- 개최 횟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연간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
-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비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30만원으로 가정

□ 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은 개정안에 명시된 정부 출연금 3조원에 한정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 차입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등은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가 부족하여 추계에 포함하기 어려운바,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정부 출연금 3조원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 출연금은 3년에 걸쳐 분할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정부 예산에 1조 1,00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²⁾

□ 제정안 부칙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운영위원회 설립(안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단가 등 산정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위원 각 5:5 비중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7인으로 전제하여 추계
 - 동 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국제정세 및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전제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개별 사업 집행을 연계·조정하고, 대외 협의와 재정·투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투자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제10조 내용 참조)

2)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
 -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2024년 6월 27일 첫 구성되었으며, 회의 개최는 2024년 3회, 2025년 4회로 나타남

[표 2]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현황: 2024~2025년

(단위: 회)

구분	2024	2025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3	4

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2024.6.27. 첫 구성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비를 감안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비 : 2024~2025년

(단위: 만원)

구분	2024	2025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30	30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200만원(연평균 84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수당×인원×횟수)	8.4	8.4	8.4	8.4	8.4	42.0	8.4

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단가는 회의수당 30만원, 민간위원 7명, 회의 개최횟수 연 4회

나. 기금 조달(안 제6조)

- 정부의 기금 출연(3조원)은 3년에 걸쳐 분할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정부의 기금 출연은 첫째 1조 1,000억원(2026년 예산), 이후 2개년에 걸쳐 각각 9,500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5] 정부의 기금 출연 추정 : 2026~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정부 기금 출연	11,000	9,500	9,500	30,000

주: 2026년은 예산액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